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7. 12 선고 2021가단588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5. 31.

판 결 선 고 2022. 7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21. 4. 16. 접수 제396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, C은 원고의 남편이자, 피고의 아버지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, C은 1990. 4. 17. 접수 제14789호로 1990. 2. 27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원고는 2007. 1. 31. 접수 제11446호로 2007. 1. 18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, 피고는 2021. 4. 16. 접수 제39639호로 2021. 4. 15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거라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증여 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, 원고는 증여 의사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게 된 것인바,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증여 의사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재필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천안지 서북구 D 답 3730㎡. 끝.

